

방법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

각종 범죄와 안전사고로부터 주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『방법용 CCTV』를 설치함에 있어 「개인정보보호법」 제25조(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·운영 제한)와 동법 시행령 제23조(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) 및 「행정절차법」 제46조(행정예고)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실시 하오니 공고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2년 3월 22일

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장



1. 공고명 : 신당동 방법용 CCTV 신규 설치

2. 관련근거

- 가.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(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·운영제한)
- 나.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(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)
- 다. 행정절차법 제46조(행정예고)
- 라.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의3(예고내용 등)

3. 행정예고(공고)기간 : 2022. 3. 23.(수) ~ 2022. 4. 12.(화) (21일간)

4. 공고방법 : 서울시 중구 신당동 홈페이지

5. CCTV 설치예정 장소

연번	설 치 장 소	설치대수	비고
1	다산로33길 10-7	2	
2	다산로39길 71-17 부근	3	
3	청구로 16길 7	3	
4	다산로33길 10-10 부근	2	추가 설치

6 의견제출

가. 제출기한 : 2022. 3. 23.(수) ~ 2022. 4. 12.(화)

나. 제출방법 : 방문, 우편, 팩스

· 우 편 : 서울 중구 신당누리센터 3층 신당동주민센터 동정부 2팀

※ 우편은 제출기한까지 도착하여야 함.

· 팩 스 : 02-3396-8956

· 문의처 : 02-3396-6719

다. 제출서식 : 의견제출서 붙임 서식

라. 제출내용

-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이유)
- 의견제출자의 성명(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), 주소, 전화번호

마. 기타사항

-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.

[붙임 1]

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				
사 업 명	서울시 중구 신당동 마을 방범용 CCTV 설치			
의견 제출자	성 명 (단체)		전화번호	
	주 소			
설치예정위치	검토의견 (의견제출 내용)			
마을 방범용 CCTV 설치사업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. 2022년 월 일 제 출 자 : (서명 또는 인) 서울특별시 중구 청장 귀하				

※ 설치 예정 위치별로 별도작성 가능